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60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이강일 · 염태영 · 김남근
김문수 · 민병덕 · 박홍배
강준현 · 황운하 · 이훈기
백혜련 · 박희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

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중지”를 “중지,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으로 한다.

제80조제5항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제5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법위반행위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의 필	제42조(시정조치) ① ----- ----- ----- ----중지,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

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u>결정</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u>7년</u>	2. ----- ----- ----- ----- <u>10년</u>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